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 1023 판결 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23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1. 18.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였다.

####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이자 E병원 이사인 F와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사실은 G 등 49명의 환자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용이나 입원 내역을 작성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사기 편취금(요양급여비용 편취금) 기재와 같이 2012. 1. 19.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4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49,088,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사기방조

피고인은 F가 2011. 12. 26.경부터 2014. 5. 9.경까지 E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면담하면서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허위 입원을 하게 한 다음,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sup>[1]</sup> 기재와 같이 G 등 70명의 환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30,45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병원 운영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 처방을 내리고 F가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도록 묵인하여 F와 위 70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 면허 없이, 2013. 6. 7.경부터 2014. 4. 1.경까지 E병원 3층에서 특수의료장비인 방사선 발생기계 (X레이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환자 H 등 105명의 환자에게 별지 X레이 촬영자 명단 기재와 같이 X레이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송치서 사본(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1. X레이 촬영사진, 수사보고(물리치료사, X레이 촬영기기 운영에 필요한 면허 취득 관련)

1. 요양급여비용자료

1. 수사협조의회에 대한 인적 사항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931호 판결문

1. 각 약식명령,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공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원환자 명단 파일, 외래환자 명단 파일

1. E병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분석, 식사기록표 분석(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I, BF, BG, BH, BI, BJ, BK, BL, BM, J. BN, BO, BP, L,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1. 각 외출외박 대장, 식사기록표(식사대장)

1. 각 금융자료(F, CI, CJ,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병원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처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F는 이미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

**미주**

[1] 1) 순번 45 T은 'J'의 오키이고, 순번 50 'K'은 'L'의 오키임.